

연간 방문객 **132만명**, 외국인 관광객 **30%**의 핫플레이스
DDP 쇼룸에서 전세계 소비자에게 혁신을 선보이세요!

「2025년 DDP 쇼룸 패션 테크기업 PoC 지원(멀티샵 지정)」 모집공고

DDP 쇼룸 멀티샵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증 가능한 혁신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패션 브랜드 DX를 통한 패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5년 4월 25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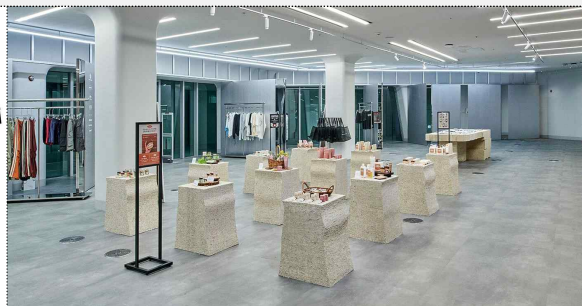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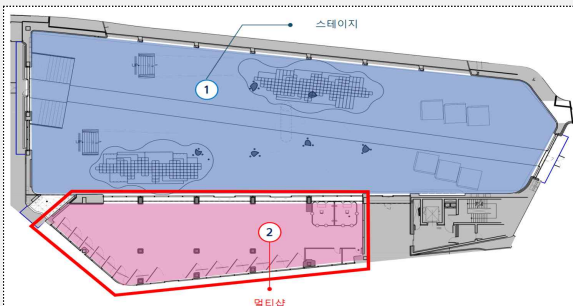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 사업명: 2025년 DDP 쇼룸 패션 테크기업 PoC 지원(멀티샵 지정)
- ☐ 지원대상: 멀티샵 입점 브랜드 및 방문객 대상 첨단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하고자 하는 기업
#브랜드 협업 #방문객 유치 #글로벌 진출 #경제적 성과 창출
- ☐ 지원내용: 패션 테크 실증공간(멀티샵* 지정) 및 기술·비즈니스 검증 지원

✦ DDP 쇼룸 '멀티샵' 소개

- 위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1층 / 149평
- 구성: 의류 전시 14면(면당 5~7m²), 패션잡화 전시공간
- 운영형태: SBA 직접운영(**참여기업 상주인력 배치 불가)
- 판매방식: 오프라인 현장 판매 진행 시, 판매 수수료 20%(VAT 포함) SBA 수취



- ☐ 지원규모: 1개사 / 검증 비용 최대 5천만원(1:1 민간부담금 출자 필수)

☐ **지원기간: 6개월**

- SBA-참여기업 간 협의를 통해 연중 PoC 운영기간 확정
- 기간 종료 후 기업 희망 시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1회, 최대 6개월)

☐ **추진방법: 민간사업지원형 민간협력사업을 통한 패션산업 DX 활성화 지원**

S B A	참여기업
실증공간 및 PoC 사업비 지원	패션테크 실증 및 브랜드 모집·선정·관리
① (기업관리)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	① (기술실증) 기술 개발 및 브랜드 대상 실증
② (자원지원) 기술 실증 공간 및 사업비 지원	② (브 랜 드) 협업 패션 브랜드 모집·선정·관리
③ (공간운영) PoC 실증공간 운영인력 배치	③ (성과창출) 실증 결과(성과 중심) 공유·홍보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대내·외 환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추진절차	비고
4. 25.(금)~5. 9.(금)	참여기업 공개모집	공고기간 14일
5. 12.(월)~5. 16.(금)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발표평가
5. 19.(월)~5. 23.(금)	기획 협의 및 협약체결	
5~6월	입점 브랜드 모집·선정	
6~11월	PoC 적용 및 운영	운영기간 협의
12월~'26. 1월	정산 및 결과보고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2

모집개요

- ☐ **모집기간: 2025. 4. 25.(금)~5. 9.(금) 14:00**
- ☐ **모집규모: 1개사 / 기술·비즈니스 검증 비용 기업당 최대 5천만원**
- ☐ **참여조건: 민간부담금(현물 또는 현금, 지원금의 100% 이상) 출자 의무**
- ☐ **모집대상: 패션 분야 첨단기술을 보유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 **신청자격(모두 해당)**

-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② DDP 쇼룸 '멀티샵' 입점 브랜드 대상 실증 가능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 ③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물 또는 현금 등 직접투자가 가능한 기업

★ 제외대상

- ①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②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
 -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모집방식: 공개모집

☐ 신청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

- ①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ba.seoul.kr/>) 기업회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신청] > '2025년 DDP 소품 패션 테크기업 PoC 지원(멀티샵 지정) 모집공고' 클릭
- ③ 게시글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④ 게시글에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 용량 30MB 제한, zip파일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신청서_기업명.zip'으로 통일
- ⑤ 최종 확인 후 하단의 **[제출]** 버튼 클릭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별첨서류 일체(양식1)
2	운영계획서(양식2)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중소기업확인서(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
6	전년도 표준 재무제표(국세청)(전년도 발급 불가 시 2023년도)
7	국세 완납증명서(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
8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
9	(요청시)기술 실증 계획서 내용증빙 및 참고자료

3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정:** 2025. 5. 12.(월)~5. 16.(금) (※ 일정 확정 후 별도 안내)

□ **평가방법:** 대면 발표평가

○ 기술 실증 계획서 기반 책임자(PM)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다수기업이 신청하여 발표평가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서면평가 단계를 추가할 수 있음

□ **평가위원:** 패션 산업분야 및 경영·기술 전문가 7인

□ **선정기준:** 평가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신청기업이 진행 도중 지원을 포기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10)	기업 경영상태	- 기업 전년도 매출액(매출실적) <table><tr><th>구분</th><th>70억 이상</th><th>40억 이상</th><th>10억 이상</th><th>10억 미만</th></tr><tr><th>배점</th><td>5</td><td>4.5</td><td>4</td><td>3.5</td></tr></table> ※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수 부여	구분	70억 이상	4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미만	배점	5	4.5	4	3.5	5		
	구분	70억 이상	4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미만										
배점	5	4.5	4	3.5											
	기업 건정성	- 기업 전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table><tr><th>구분</th><th>100% 미만</th><th>200% 미만 100% 이상</th><th>300% 미만 200% 이상</th><th>300% 이상</th></tr><tr><th>배점</th><td>5</td><td>4.5</td><td>4</td><td>3.5</td></tr></table> ※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수 부여	구분	100% 미만	200% 미만 100% 이상	300% 미만 200% 이상	300% 이상	배점	5	4.5	4	3.5	5		
구분	100% 미만	200% 미만 100% 이상	300% 미만 200% 이상	300% 이상											
배점	5	4.5	4	3.5											
정성 (90)	사업 역량	- 패션 테크 실증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현실적인 계획이 있는가 - 사업 목적이 DDP 쇼룸의 공간 특성·비전에 부합하는가 - 사업비 규모와 세부 예산항목·비용은 적정한가 <table><tr><th>구분</th><th>A</th><th>B</th><th>C</th><th>D</th><th>E</th></tr><tr><th>배점</th><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	구분	A	B	C	D	E	배점	30	27	24	21	18	30
	구분	A	B	C	D	E									
	배점	30	27	24	21	18									
	기업 역량	- 패션 관련 유사 수행경험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향후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만한 요소를 갖추었는가 -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PM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되는가 -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table><tr><th>구분</th><th>A</th><th>B</th><th>C</th><th>D</th><th>E</th></tr><tr><th>배점</th><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table>	구분	A	B	C	D	E	배점	15	13.5	12	10.5	9	15
구분	A	B	C	D	E										
배점	15	13.5	12	10.5	9										
	기술 역량	-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인가 - 사업기간 내 실증 가능한 완성도 있는 기술인가	15												

		- 사업화를 통해 패션산업 전반에 확장 가능한 기술인가 <table><tr><td>구분</td><td>A</td><td>B</td><td>C</td><td>D</td><td>E</td></tr><tr><td>배점</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table>	구분	A	B	C	D	E	배점	15	13.5	12	10.5	9	
구분	A	B	C	D	E										
배점	15	13.5	12	10.5	9										
	협업 역량	- 멀티샵 입점 브랜드 모집·선정 계획이 우수한가 - 멀티샵 입점 패션 브랜드 대상 실증·협업 계획이 우수한가 - 협업 가능한 우수 브랜드·IP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 <table><tr><td>구분</td><td>A</td><td>B</td><td>C</td><td>D</td><td>E</td></tr><tr><td>배점</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	구분	A	B	C	D	E	배점	30	27	24	21	18	30
구분	A	B	C	D	E										
배점	30	27	24	21	18										
총 계				100											

☐ **결과발표: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 안내 및 SBA 홈페이지 공고**

4

선정 후 절차

☐ 기획 협의 및 협약체결

- [기획협의] 실증기간·공간 확정 및 톤앤매너 유지를 위한 세부 시공계획 협의
- [협약체결] 협약기간, 상호간 역할, 사업비 지급, 정산 등에 관한 협약 체결
-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 후 지원금 100%(기업당 최대 5천만원) 지급
 - ‘별첨. 사업비 항목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

☐ 입점 브랜드 모집·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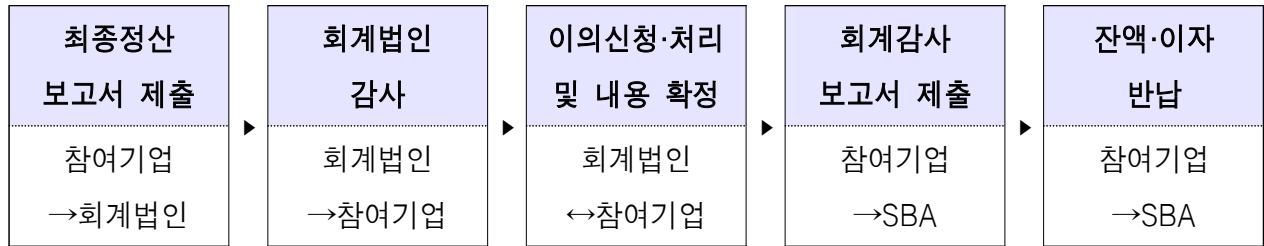
- [브랜드 모집]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sba.seoul.kr) 통한 온라인 접수
- [브랜드 모집] 실증 기술·비즈니스 사전 안내를 통해 관심 브랜드 공개모집
- [브랜드 선정] 참여기업의 자체 선정기준 수립 후 서류 검증 및 인터뷰 등의 절차를 통해 실증 기술·비즈니스 적용이 용이한 패션 브랜드 선정

☐ PoC 적용 및 운영

- [PoC 적용] 입점 브랜드 지속 관리를 통해 실증 기술 사업화를 위한 DB 확보
- [PoC 운영] DDP쇼룸 내 상주인력 SBA 직접배치(참여기업 인력 배치 불가)
- [PoC 운영] 참여기업이 실증 기술과 연계된 상품·서비스 오프라인 현장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SBA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판매대금의 20%를 SBA에 수수료로 지급함
- [PoC 운영] 희망시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 단, SBA 자체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연장 승인 불가할 수 있음

☐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SBA 지정 공인회계법인 통해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반납



○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제출 및 성과 홍보 추진

5

유의사항

- ☐ 선정기업은 협약시 서울경제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SBA는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 선정기업은 기술 실증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운영·철거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선정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 SBA와 선정기업이 체결한 사업의 내용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

6

문의처

- ☐ 서울경제진흥원 뷰티기업육성팀(02-6951-4316, whitening1379@sba.seoul.kr)

별첨

사업비 항목 및 사용기준

□ 사업비 항목 및 사용기준

구분	비목	세목	사용기준
인건비	인건비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참여율 반영 ※ SBA 지원금: 사용 불가 / 민간부담금: 100% 이내
직접비	개발비	디자인	- 기술 전시 시설물 디자인, UI/UX 개발 등
		S/W	- 실증 기술 개발, 콘텐츠 변경 등
	시공비	H/W	- 사업기간 중 렌탈료(구매·제작하는 경우 총 내구연한 중 사업기간 비율을 산정하여 계상 가능) 등
		제작비	- 기술 전시 시설물 제작, 인테리어 등
	사업 활동비	제경비	- 이행보증보험증권(필수), 회계정산수수료(필수) 등
		홍보비	- 본 사업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행사, 광고 등
		기타 활동비	- 회의비, 추진비 등 - 설명회, 기업 네트워크 행사 등
간접비	기타운영비		- PoC 사업과 관련된 간접비용(기관 공통경비 등) ※ SBA 지원금: 10% 이내 / 민간부담금: 비율 제한 없음

□ ‘민간부담금’ 계상기준

- ‘민간부담금’은 인건비만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 선정기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현물 또는 현금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 ‘민간부담금’ 중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하며, 참여하는 인력의 참여율은 타 사업과 합산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민간부담금’ 중 장비, 부동산 등을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선정기업이 본 사업 참여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장비·부동산의 구입가 20% 내에서 계상 가능하며, 사업 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등 범용성 장비는 계상할 수 없다.
- ‘민간부담금’ 중 별도의 계상기준이 없는 무형적 자산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

★ [참고]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사업비 지급 및 사용

- 사업비 집행의 책임은 선정기업에 있다.
- 선정기업은 별도의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하며, 해당 통장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선정기업은 협약시 서울경제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선정기업의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협약기관의 다른 통장으로 지출한 이후 증빙을 통해 현물로 인정받아야 한다.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시 선정기업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SBA 지정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전용통장의 이체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산은 선정기업이 현물로 계상한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정기업에서 정산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 선정기업이 제출한 정산내역 중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을 시 불인정할 수 있다.
- 선정기업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개별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여 정산한다.
- 선정기업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무형적 자산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정산을 갈음하고,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불인정할 수 있다.
- 선정기업은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집행 이전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집행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비영리기관, 해외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선정기업이 활동비 및 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협력사업의 수행 연관성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